

강원도립대학교 실험·실습비 운영지침

(제정) 2001-12-24

(개정) 2005-03-14

(개정) 2016-04-25

제1조(목적) 이 운영지침은 강원도립대학교 실험·실습관리위원회규정 제3조의 2에 의거 실험·실습비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효율적 운영으로 충실한 실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<개정 2016.4.25>

제2조(운영원칙)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.

1. 각 학과에서는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실습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실험·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하고, 각 학과의 교육과정상 사용빈도가 높은 기자재를 우선 구입한다.
2. 학과별로 기자재의 중복구입을 방지하고, 기자재의 공동 사용을 적극 유도하여 실습교육의 효율성을 확보한다.
3. 학과별 실습기자재의 확보에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.

제3조(실험·실습비 및 시험연구비 배정원칙) 실험·실습비 및 시험연구비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실험·실습기자재 구입비는 신설학과에 우선 배정하고 계열별 재학생의 등록금 비율로 배정하되, 3년제 학과의 경우 20%를 증액 배정한다.
2. 시험연구비는 계열별 재학생의 등록금 비율 및 재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. 단, 재학생 수는 3월초 입학식 날 기준으로 한다.

부 칙(2001. 12. 24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 3. 14)

이 지침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)

이 지침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